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40조 및 별표 3 신설)

-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며,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에 따른 통지를 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할(안 제42조 및 별표 4 신설)

- 1)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도록 함.
- 2)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신설)

-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9조 신설)

-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2)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5. 6.경)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 손실 중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
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
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부상등급의 변
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할)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군인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자인 군인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제9해병여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자인 군인이 당해 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③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한다.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2조제1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적어도 소속 공무원·법관·의사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

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군의를 포함한다)

5. 군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건의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제42조제1항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육군본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해군본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공군본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육군제2작전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육군수도방위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일원
육군수도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육군제1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육군제1군단 관할구역
육군제2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육군제2군단 관할구역
육군제3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육군제3군단 관할구역
육군제5군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육군제5군단 관할구역
육군제31사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육군제35사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육군제37사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충청북도 일원
육군제53사단사령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제9해병여단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보상금 [] 신규 지급 청구서
[] 추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손실보상심의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 심의·의결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 · 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 (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제4항 · 제7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직인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항·제7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 금액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u> <u>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 손실 중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u> <u>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u> <u>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u> <u>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u> <u>③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의 멸실</u>		

<신 설>

·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

· 기각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

<신 설>

우를 포함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
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부상
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
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
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
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
치와 관할) ① 법 제50조의2제3
항에 따라 군인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
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
회는 직무수행자인 군인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한다. 다만, 제9해병여단 손실보
상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자인
군인이 당해 군 소속이 아닌 경
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③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
· 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

<신 설>

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
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
할한다.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2조
제1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
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
원(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
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적어도 소속 공무원·법관·의
사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
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

<신 설>

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군의를 포함한다)

5. 군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신 설>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 설>

<신 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

<신 설>

<신 설>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41